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자율신고 및 자율납세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**  해관총서공고 2018년 제24호  세수 징수관리방식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해관총서는 자율신고 및 자율납세(“자보자납”)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.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우대무역협정 하에 수입신고서는 모두 “자보자납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. 기타사항은 해관총서 2016년 제62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.  상술한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실시한다. 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  해관총서  2018년 3월 29일 |  | **关于扩大自主申报、自行缴税适用范围的公告**  海关总署公告2018年第24号  　　为加快推进税收征管方式改革，海关总署决定扩大自主申报、自行缴税（“自报自缴”）适用范围。现公告如下：优惠贸易协定项下进口报关单均可适用“自报自缴”模式。其他事项按照海关总署2016年第62号公告执行。    上述规定自2018年4月10日起实施。  　　特此公告。  　　海关总署  　　2018年3月29日 |